

유기농업·유기식품의 세계적인 동향과 전망

김창길 박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I. 유기농업의 특성

최근 소득수준 증가와 더불어 식품 안전성과 환경보전이라는 관점에서 소비자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개념적으로 유기농업이란 화학적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 재배에 의해 농산물을 생산하며, 유기물을 토양에 투입함으로써 생태계의 순환기능을 유지·활용하며, 토양의 생산력을 장기에 걸쳐 지속 가능하게 하는 생산활동을 말한다. 실제적으로 유기농업에는 다양한 원류가 있으며,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목적이 유럽지역과 우리나라와는 여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일찍이 구미에서는 전작 농업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농업생산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의 투입을 필요로 하였고, 이러한 실천결과가 소비자의 수요와도 합치하여 유기농산물 생산이 이루 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유기농업은 유기운동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유기농업의 본격적인 실천은 농업생산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당위성보다는 비료와 농약 등 화학적 농자재의 금지적 행위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농업생산에 있어 무농약·무화학비료의 두 가지 사항만을 준수하면 어떠한 재배방법도 유기 농업으로 간주 될 수 있다. 실제적으로 다양한 유기농업이 출현하여 소비자에게 혼란과 불신감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제시된 유기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표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유기재배라는 것은 화학합성의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재배방법을 나타낸다. 한편 구미에서는 이른바

유기농산물에 대한 표현으로서 '유기식품(Organic Foods)'라는 명칭이 일반적이다. 한편 중국에서는 안전하고 고품질의 건강에 좋은 식품(원료 및 가공품 포함)을 총칭하여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유기식품 대신 녹색식품(Green Foods)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유기농산물의 식품으로서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으나, 최근 소비자의 건강과 식품의 안전성 및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세계적으로 유기농업이 농업부문의 성장 부문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기농산물은 일반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으나(OECD 회원국의 경우 품목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20~30%의 가격 프레미움으로 보고되고 있음), 생산자인 대부분의 농민들은 노동투입의 증가 및 수익에 대한 불확실 등의 이유로 유기농법 도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적으로 유기농업의 생산성은 기술수준, 작물종류, 이행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관행농업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FAO(세계식량농업기구)는 상당한 농업생산이 유기농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세계적인 식량감산으로 식량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상당한 유기농업이 정착된 유럽 국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관행농법으로부터 농법전환이 잘 이루어져 5~10년 정도 경과되면 생산량도 관행농업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유기농법 정착을 위해서는 상당한 유기재배 기술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II. 주요국의 유기농업 정책

유럽의 EU 국가에서는 GATT·CAP 및 WTO체제 하에서 지속적 농업을 향한 유기농업으로의 전환 및 유기농산물의 시장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덴마크에서 유기농업은 관행농업에 의해 야기된 환경문제를 완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제시되어, 유기농업에 대한 민간·정부의 지지수준이 높아 세계의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87년에 유기생산법(The Act on Organic Farm Production)이 발효되었고,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과 기초적인 시설개발 및 유기농산물의 인증과 라벨표시에서 법적 규제를 도모하는 등 본격적인 유기농업 지원제도를 수행하여 왔다. 관행농법으로부터 유기농법으로 전환시 경제적 지원책을 1987년에 도입되어 유기농가에 대해 전환비용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러한 농법전환 보조금은 가축밀도에 따라 1ha당 DK2,600~3,800(약 42만원~65만원)의 일시적인 장려금으로 이루어진다. 장려금 수혜대상 조건으로는 화학합성비료·농약·

성장조절제의 사용금지 및 영양제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 외에도 가축단위의 사료자급을 확립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4년 이내의 완전한 농법전환과 전환 후 적어도 2년간의 유기농업의 이행이 의무시 되고 있다. 전환지원제도를 발족시킨 이래, 유기농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8년에는 219호, 1992년 672호, 2000년에는 3,500호로 급증하였다. 덴마크 농무성이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회답자의 80%이상이 전환보조금을 얻는 것(경제적 인센티브)보다 오히려 환경을 배려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며, 전환농가의 환경문제에 대해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덴마크에서는 유기농업의 적극적인 육성과 관련 정부가 관행농업에 대한 법률상의 규제 기준으로 가축·분뇨·사일리지(저장성목초)시설의 확대와 개조, 농지면적에 대한 가축두수 기준, 윤작과 비료사용계획 등에 관한 특정계약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농업에 대한 엄격한 제도로 농가의 환경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유기농법으로의 전환이 증가하게 되었다. 유기농산물의 유통과 관련해서는 생협이 시장확대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유기농산물의 80%이상이 생협이 전개하고 있는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다. 최근 소비자 반응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대다수가 20~30%정도의 가격차라면 유기농산물의 구입을 희망하며, 더욱이 전체의 50%가 비교적 가격이 높아도 유기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라고 회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웨덴에서는 덴마크보다도 이전인 1985년에 화학비료의 과잉투입에서 유래되는 환경오염을 피하기 위해서 유기비료로 전환을 도모하는 농업관련 시책이 추진되었다. 이와 함께 경관적 가치가 있는 농가에 대해 보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1986년에는 농약사용 및 과잉생산의 감소, 그리고 연구개발과 유기농업보급을 위한 기금창설을 목적으로 전체 농약에 환경세금이 부과되었으며, 이와 아울러 유기농업 육성을 위한 특별대책이 1989년에 도입되어 유기농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오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에서는 1990년에 유기농업으로 전환시 5ha이하 농장의 경우 NK 1만5,000(약 230만원), 5ha이상의 농장에는 NK 2만(약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불하는 정책이 도입되었다. 이 보조금은 농법전환 초기년도에는 경작 가능한 농지(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목초지를 포함)의 경우 추가적으로 1ha당 NK2,000(약 30만원)이 부가된다. 또, 전환 2년째, 3년째에는 1ha당 NK1,000(약 15만원)의 지불이 있으며, 그 후 3년간 매년 1ha당 NK500(약 7만 5천원)이 지불되고 있다. 이러한 장려금 제도는 도입에 따라 노르웨이의 유기농가도 매년 크게 증가추세에 있다.

핀란드에서는 1990년에 유기농업전환 육성계획이 수립되어 3년간 1ha에 대해 FM2,800(약 60만 2천원)이 지불되고 있다. 이러한 농법전환 지원 보조금 지불은 3년 정착 이후에도 여전에 따라 3년에서 5년간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다. 스위스는 절반이상이 전업농가로 호당 평균 9.9ha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스위스의 유기농업

은 환경보전과 경관의 다양성, 관광 등을 겨냥하여 유기농업정책에 추가적인 전환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제도(훈련 프로그램, 기술보급서비스)와 소비자 수요의 확대로 유기농장 수는 1990년의 940호에서 1993년의 1,500호, 2000년에는 5,200호로 증가하였다. 또한 스위스에서는 유기농법에 의한 작물재배의 경우 ha당 1,800스위스 프랑(약 216만원)의 부가적인 보조금이 지불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유기농 직접지불제도는 농가가 스위스유기농업협회(Swiss Organic Farming Organization)의 인증기준에 따르고, 12년간 유기농업을 실천해야만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보조금을 반납해야만 한다.

독일은 환경문제라기 보다도 오히려 농산물 과잉생산(곡물·유지작물·두과작물의 과잉, 특히 양과 소 등 축산물 과잉)의 감축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한 집약적 농업의 축소정책의 일환으로서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지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전환지지제도의 도입은 독일의 유기농업 실천농가를 급속도로 확대시켰다. 정부의 집약적 농업의 축소정책에 선행하여 국가수준에서 몇 개의 유기전환 장려금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개별농가당 약 1만 DM(약 660만원)의 전환장려금이 지불되었다. 더욱이 유기농법 보급을 위한 훈련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개개 농가에 DM300(약 12만원), 트레이닝 중 노동력의 대체비용에 대해 DM500(약 30만원)의 장려금이 지불되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유기농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독일의 유기농업은 다른 EU국가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유럽 지역과는 달리 미국에서의 유기농업 대책은 1960년대에 자연농법에 관심을 가진 일부 진보적 생산자에 의해 시작되고, 그 후에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공적인증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발전하여 갔다. 1974년에는 캘리포니아 인정유기농업자조합(CCOF)이 설립되고, 1979년에는 유기농업기준 및 법령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정한 기본지침이 수립되기까지에는 약 10년의 시간이 걸렸다. 당시 미국에서는 유기농업의 보급이 주요한 목적이 아니라 환경보전에 의한 농업생산성의 유지·발전이 강조되었다. 1985년의 농업법에서 처음으로 환경보전적인 농업의 기술연구 및 보급이 추진되었다. 미국의 경우는 EU제국과 같이 유기농업을 장려하는 특별보조금제도 및 기금계획은 1996년까지 실시단계로 이행되지 않았다. 1985년에 식료안전보장법(Food Security Act)이 승인되어 1987년부터 저투입지속농업(LISA)을 위한 연구개발과 보급계획이 구체화되었다. 그 계획은 LISA의 연구와 교육확장을 위한 390만달러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은 수질오염 및 토양유출을 방지하고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감소시켜 자연·생태계보전을 의도하는 것으로, 그 생산형태는 유기농업을 주요 보급농법으로 삼고 있지만, 화

학비료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닌 환경보전과 생산성유지의 양면을 중시하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유기농업의 전개에 영향을 미친 정책은 1990년, 그 후의 유기식료의 전면적인 기준을 확립한 '식료와 농업보호와 무역에 관한 법률(Food, Agriculture, Conservation and Trade Act)'이 승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유기식료의 기준이 완성, 유기농업 인증제도의 기초가 굳어졌다. 일부 주에서는 농약·화학비료에 목적세를 부과하여 환경보전형 농업을 위한 조사연구의 자금원조 및 유기농업으로의 신규참여 지원책, 인정제도 외에도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대책으로 유기농산물의 생산은 10년간 대략 10배로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한편, 유기농산물의 유통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건강식품 및 유기식품 등의 전문점 또는 패마스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유기채소는 절반이 농가직판으로 일반 도소매점이 취급하는 것은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않는다. 최근에는 식품의 안전성 및 질적인 면에서 유기식품이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 최근 건강지향 및 생태지향, 녹색소비자운동(Green Consumer Movement) 등이 소비자의 의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소비자요구의 고조로 1995년의 유기식품시장의 판매액은 28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일반 소매상 중에서도 유기농산물을 취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유기농업의 발전과정에는 유기농업의 통일기준 및 환경농업프로그램으로서 연구개발, 교육·훈련, 시장확대와 유기인증 수속을 촉진하는 보조금제도 등의 정책이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이와 함께 식에 대한 소비자의식의 변화, 즉 소비자 선택기준이 가격 및 양에서 안전성 및 질, 더욱이 환경보호 등을 중시하는 것으로 이동하여 온 것도 유기농업 확대에 박차를 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농산물수출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유기농산물에 대한 대세를 일찍이 간파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준비를 해왔다. 중국 농업부는 1989년 『농촌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8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녹색식품(green food)' 분야를 미래농업의 새로운 발전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에 녹색식품을 관리하는 전담기구로 『녹색식품관리소』를 발족시켰고, 1992년에는 녹색식품의 생산·유통·인증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관리기구로 농업부에서 독립된 조직으로 『중국 녹색식품발전센터』를 설립하였다. 1993년에는 녹색식품의 수출·판매 업무 담당기관으로 『중국 녹색식품총공사』를 설치하였다. 녹색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조직이 정비되면서 1995년에는 『녹색식품생산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제도적 기틀을 완비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정부의 임의규정으로 관리되던 녹색식품 관리체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III. 국제적인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

유기농산물의 국제적 기준과 관련 아직 통일된 지침은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대표적인 기준으로 FAO와 WHO가 합동으로 설립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IFOAM(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유기작물개선위원회(Organic Crop Improvement Association, OCIA), 및 CCOF(캘리포니아 인증유기농업가협회) 등을 들 수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으로서는 국제적 민간생산자단체인 IFOAM과 같이 NGO주체에 의한 각국의 환경조건에 적합한 목표해야 할 수준을 제시하는 것과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볼 수 있는 행정주도의 하모나이제이션에 의한 기준완화의 방향이 나타나 있다.¹⁾ OCIA는 미국 중심의 세계적인 인증기관으로 국제적인 유기기준 지침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유기농산물의 시장확대에 수반되어 요구되는 것이 적정표시의 기준과 인증 구조이다. 미국과 유럽의 유기농산물의 대표적인 기준은 IFOAM 지침이다.

이처럼 여러 가지 국제적 유기농산물 인증 기준은 기본적으로 농약 및 화학비료의 투입을 금하고 있으며, 부수되는 여러 가지 규제에 관한 지침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에는 ①라벨표시에서 ‘유기’ 및 ‘유기재배’를 비롯한 용어의 규제 ②완충지역에 의한 필요조건 ③유기농업전환의 필요조건 ④ 유기농업재배설계의 필요성 ⑤유전자변형작물(GMO's)의 규제 ⑥가공식품재료와 라벨표시규제 ⑦가축사료조건 ⑧유기농업과 관행농업을 같은 농장내에서 경작하는 경우의 규제 ⑨화학적 투입재·농산물판매처·경비 등의 기록규제 ⑩잔유검사 등이 있다.

특히 여기서 문제삼는 인증제도의 목적은 식료안전성을 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보전·농업의 지속성에 크게 역할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인증제도는 농장 외의 화학투입물량을 한정하는 것이며, 가능한 한 농장내의 물질순환을 필요로 하며, 토양의 질 및 유기물 유지가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기본적으로 인증기준의 확립은 ‘위조품’을 배제하고 유기농산물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의 상품선택에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등 큰 메리트가 있지만, 반면 인증제도가 통일되지 않고, 복수의 인증제도가 병립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점도 존재한다. 게다가 사용하고 있는 인증제도 안에 불충분한 점이 있기도 하며,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유기농산물 및 가공품의

1) IFOAM은 UN의 공식적인 비정부기구로 유럽의 유기농업 단체가 중심이 되어 1972년에 설립되었으며, 세계 유기농업운동을 대표하는 단체로, 현재 115개국에 걸쳐 650여개의 유기농업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나아가서 유기농산물 그 자체에 대한 신뢰도 손상될 수 있다.

최근 미국은 지금까지 제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표시되던 유기농축산물의 성분 표시가 지난 2002년 10월 21일을 기해 미국 전역에서 농무부가 정한 단 하나의 기준에 따르게 되었다. ‘히피 식품’이라는 60-70년대의 비웃음 서린 시각에서부터 최근 대기업들이 넘보기 시작할 정도로 수익성 높은 상품이라는 시각까지 유기농 식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달라졌지만 유기농 식품 표시는 아직까지 일정한 기준 없이

<표 1> 여러가지 국제적인 유기농산물기준의 비교

기준항목	CODEX위원회	IFOAM	OCIA	CCOF
단체개요	FAO와 WHO의 합동 국제식품규격위원회로서 1962년 설립	1972년 설립, 세계 100개국, 500이상의 단체 회원으로 구성. 기준 설정이 가장 중요 활동임. 민간조직을 위한 법적효력은 없지만 국제적 신용과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1974년에 미국에서 설립. 현재 미국 및 구주, 아시아 등에 걸친 농민그룹, 법인회원, 개인회원이 구성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증 단체	1973년에 캘리포니아의 유기농업인들에 의해 설립된 주수준 최대의 인증 단체임. 인정회원은 670명. 연방유기식품생산법의 제정에 큰 역할을 도모함.
유기농업으로의 전환	파종전 최저 2주간은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지 는 것, 최초 수확전 1년간은 ‘전환증’ 표시呗. 유기농법과 관행농업의 전환을 반복하는 것은 금지.	유기 생산 개시 전의 최저 1년전은 당기준에 따라 생산이 실시되며, 최초 수확전 1년간은 ‘전환증’ 표시呗. 유기농법과 관행농업의 전환을 반복하는 것은 금지.	수확전 3년간은 비승인 물질을 사용불가. ‘전환증’은 인정되지 않음. 유기농법과 관행농업의 전환을 반복하는 것은 금지. 비유기포장과 8미터 이상의 차단 간격설정.	수확전 3년간은 금지 물질 사용불가. 금지 물질을 최후에 사용하고 나서 1년간 경과 후에 ‘전환증’ 표시呗. 인접지에서 오염우려가 있는 경우 방풍림 등 3미터 이상의 완충지대 설정.
작물생산	토양비옥토 및 생물 활성유지·증진은 적절한 다년 윤작계획에 서 두류식물, 녹비 또는 심근성식물의 재배, 유기물의 투입 등에 의함. 병해충 및 접초방제는 적절한 작물 및 품종선정, 윤작계획, 천적보호, 접초소각, 생물적방제 등에 의함.	윤작은 각 인증프로그램에 의해 최저기준을 설정함. 퇴비는 환경, 작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가능 한 유기인정의 종자 를 사용함.	윤작 실시, 하수 및 오염된 흙 사용금지. 병해충방제는 저항성이 있는 품종, 재배법에 의하며, 모든 농약, 과학·석유제초제는 금지.	장기적 토양관리프로그램을 실행. 토양분석이 의무시됨. 토양관리는 녹비작물, 천연 광물, 퇴비를 중심으로 실시함. 환경화학비료, 화학합성농약은 금지. 병충해방제는 저항성 품종, 윤작·혼작, 유익충의 보호 등에 의함.

지상강좌

가축생산	유기지침에 따라 생산된 사료를 투입하며, 건물환산으로 80%/85%/를 채운다. 수정란 이식 기술은 인정하지 않음.	관행농법으로 재배된 사료는 반추동물 15%, 비반추동물 20%(건물환산)까지 미. 합성성장촉진제, 성장조정제는 사용 금지.	지침에 제시된 인정 사료를 투입하며, 인공사료, 요소, 분뇨 등을 주는 것은 금지하고 또한 합성발육 촉진제 사용도 금지.	장기적 토양관리프로그램 실행. 토양 분석이 의무시 되며, 토양관리는 녹비작물, 천연광물, 퇴비를 중심으로 실시함. 합성화학비료, 화학합성농약은 금지. 병해충방제는 저항성품종, 윤작·흔작, 유익충 보호 등에 의함.
저장·운송	유기와 비유기는 별도로 취급하며, 명확히 표시되는 것.	유기와 비유기는 개별 취급하며, 명확히 표시되는 것.	OCIA 인정제품과 비인정제품은 명확히 표시, 구별하여 취급되는 것.	비유기 물질에 대한 오염·혼합에 대해서 적절한 방지책 취함.
식품가공	비유기농산물원재료는 최종제품의 5%까지 사용가.	원료의 95% 이상이 유기농산물에서 유래. 방사선 조사, 마이크로파 사용금지.	모든 일차자재는 OCIA 또는 인정단체에 의하여 유기인정되어 최종제품의 95%를 점유하는 것.	비유기자재가 총중량의 5%를 초과하지 않음. 합성인공보존제, 치색료, 착향료, 방사선조사 등 처리 금지.
기타	허가물질 리스트, 검사/인정단체에 대해서. 유전자변형작물을 인정하지 않음.	96년 개정으로 '사회적 권리와 공정한 무역'으로서 농업노동자, 주민·어린이의 인권보호가 추가됨. 유전자변형작물을 인정하지 않음.	특수농작물기준(온실재배, 벌꿀, 매플시럽, 표고버섯 등, 야생식물, 천연신선체조)이 인정되고 있음. 유전자변형작물을 인정되지 않음.	버섯과 온실재배에 관한 기준이 있고, 유전자변형작물을 인정되지 않음.

자료 : 大山利男 “해외의 조직기준과 인정제도,” 「월간 JA」, 1997. 7월

무려 43개 기준에 따라 복잡하게 이루어져 왔었다. 농무부는 유기농 식품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생산자가 이를 표시할 때는 농무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고 일부 상품에는 정부 승인표시를 부착하게 된다. 농무부 승인표시는 해당 식품이 농약이나 화학비료, 생명공학기술, 항생제, 성장호르몬, 방사선 조사 등을 사용하지 않는 생산자에게서 나온 것임을 현장조사를 통해 입증된 것에 한하며, 성분 전체가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경우에만 ‘100% 유기식품’이란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95% 이상 유기농 성분인 식품에는 ‘유기식품’, 70% 이하의 유기농 성분 식품에는 ‘유기성분 사용’ 또는 ‘유기성분 함유’ 표시가 되며 정부승인을 의미하는 녹색봉인

은 부착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한편 미농무부는 새로 시행되는 표시법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당도나 지방성분이 더 높을 수도 있는 유기농 식품에 대해 재래식 생산법에 의한 식품보다 안전하다거나 영양가가 높다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이번 조치에 대해 유기식품 애호가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환경보호 운동가들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토질 개선과 수질 개선, 가축에 대한 인도적 처우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반기고 있다. 그러나 식품점, 식당 등에 소규모로 유기 식품을 공급해오던 영세 유기농축가들은 이를 계기로 대기업들이 유기농축산물 생산에 본격 진출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적인 기준과는 별개로 중국은 주로 미국의 유기식품 관리기준을 참고하여 녹색식품 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녹색식품의 등급은 관리기준의 이행정도에 따라 AA등급과 A등급의 두 등급으로 대별된다. AA등급은 엄격한 환경조건, 화학비료·농약 등을 전혀 투입하지 않는 생산조건, 일체의 화학합성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조건 및 제품과 환경에 대한 이차적 오염이 없는 포장유통조건 등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부여된다. 한편 A등급의 경우는 적절한 환경기준과 특정시기(예를 들면 수확기 1개월 이전)에는 특정농약(예를 들면 생물농약 등)의 사용이 가능한 생산조건, 최종제품의 잔류농약(화학합성물 포함)의 국제허용기준의 1/2이어야 한다는 제품조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중국의 녹색식품의 등급을 우리나라 기준에 적용하면 AA등급에는 유기농산물이 포함되고, A등급에는 무농약 농산물과 저농약 농산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녹색식품 관리제도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경우 민간 유기농업단체가 중심이 되어 인정제도를 수립하여 검사·인증하는 「민간주도형」과는 달리 정부기관이 직접 관리·지도하는 「정부주도형」이라고 특징 지워진다. 중국의 녹색식품 생산관리는 국내수요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향후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 녹색식품 시장을 겨냥한 수출 전략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VI. 유기농산물·유기식품 시장 전망

현재 유기농산물을 소비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형성에서 선도적 역할은 환경 및 건강지향성이 강하고 식품에 대해 안전성을 중시하는 소비자층이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특정의 소비자층에 대해서는 유기농산물의 특성을 강조하여 시장에서 차별적 유리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차별화의 요인은 재배방법(환경친화적 농법), 품종, 생산량, 품질, 시기 등에 대한 생산자의 요구 외에 생산자의 기능 및 숙련도, 전통, 산지이미지 등 다양한 요소 가운데 어느 요인이 소비자가 공감하는 가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특히 향후 유기농산물·유기식품 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는 ‘신뢰성’이다. 그것은 기준·인증·표시를 비롯한 ‘제도적인 신뢰’와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성에 기초한 신뢰’이다. 전자는 기본적으로는 현대의 농산물유통의 대세인 대형마켓을 전제로 한 유통에서 필요시 되는 것이며, 이른바 ‘상호 얼굴을 보지 않는 유통’이었기 때문에 그 신뢰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필요시 되었던 것이다. 이것과는 역으로 후자는 ‘상호 얼굴이 보인다’는 관계를 전제로 한 유통이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신뢰는 적어도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개개 관계성에 의존하는 것이며, ‘제도’를 오히려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후자와 같이 관계성에 기초한 유통은 ‘또 다른 하나의 유통’으로서 특정화 될 수 있다. 유기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도모하는 것이 ‘택배’이다. 원래는 생산자자신이 소비자를 호별로 방문하여 농산물을 배달한다는 의미에서의 ‘택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택배’라는 운송서비스 비즈니스 시스템을 확립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떨어진 지역의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유통 인프라로서 주요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택배업자는 유기농산물·유기식품 유통에서 물류기능을 수행하는데 불과하지만 향후,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라는 ‘독자능력’을 활용하여 상품개발 및 캐탈로그 등을 통한 거래매개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유기농산물 비지니스에 본격 참여하는 것도 충분히 예상된다. 유기농산물시장은 택배편이라는 수송면에서의 유통인프라에 더해 인터넷 등 정보통신면에서의 유통인프라의 정비로 새로운 활성화가 기대된다.

현재 유럽의 경우 2010년을 기준으로 전체농업에서 유기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여 적극적인 유기농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 유기농업의 비중을 독일과 덴마크는 20%, 네덜란드가 10%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직접적인 보조금(direct payment)을 지금 외에도 기술개발, 기준설정, 라벨링, 시장개발 등 여러 가지 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미국은 금년 10월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유기농업 인증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유기식품 산업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는 유기식품이 미국 식품공급량의 2%도 채 안 되고 경작지 면적의 1%도 안 되지만 연간 성장률이 20%에 달하는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유기농 식품이 건강식품 전문점에서 대형 슈퍼마켓 판매대로 진출하면서 매출액은 연간 100억달러대에 이르며 앞으로 2010년에 200달러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비즈니스 위크호에 따르면 대규모 식품회사인 제너럴 밀스와 프리토-레이, H.J.하인츠가 유기농식품 시장에 진입하였고 켈로그는 유기농 시리얼인 ‘카시’를 소유하고 있고 크래프트사는 보카사로부터 베지버거 회사를 인수했다. 하인츠는 최대의 유기농 식품회사인 하인 셀레스티얼 그룹의 지분 19%를 매입하고 하인츠

상표로 유기농 토마토 케첩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세이프웨이를 비롯한 슈퍼마켓 체인들은 민간 환경단체 표시가 부착된 유기농 및 천연식품들을 판매하고 있고 홀푸드 마켓은 소프트 드링크와 샐러드 드레싱, 과자, 팝콘을 비롯한 유기농 식품들을 판매 중이다. 이러한 거대기업의 유기식품 진입은 향후 밝은 시장성을 예견하는 것으로 식품시장 판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우리나라와 인접하고 있는 중국은 2001년 녹색식품 수출총액은 약 400억 위엔으로 농산물 전체 생산액의 1%에 수준이나, 그 규모는 매년 20~30%의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국내외 채소류의 소비동향 및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녹색식품의 수출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중국은 UN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의 후원 하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유기농업 및 녹색식품에 관한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이 녹색식품 분야에 있어서 구미권 중심에서 탈피하여 아시아 지역의 주도권을 선점 및 녹색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노력 등은 향후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